

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9. 10. 17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센터는 경영대학에 둔다.

제3조(운영원칙) ① 센터는 사업수입 범위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운영에 따른 간접경비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원사업 홍보, 참여기업 및 구직자 모집
2. 청년 취업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
3. 참여 기업 직원 관리 및 노무 등 교육
4. 구직 청년 직무 및 팀 빌딩 등 교육
5. 취업자 개인 상담
6. 그 밖에 센터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2장 조직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본교 경영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인력) 센터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위원회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⑤ 센터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